#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9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 강대식 · 안상훈 · 김 건

김용태 · 김예지 · 구자근

강선영 • 배준영 • 권영세

유용원 · 강명구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·소요시기 및 소요량, 방위산업육성효과,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·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.

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(안)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, '소요제기-소요결정-선행연구'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

이에 '소요제기-선행연구-소음검증'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(6.8년 소요→2.7년 목표)하 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, 국방과학기술,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"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"을 "소요결정 시"로, "선행연구(先行研究)를 거친 후"를 "선행연구(先行研究)를 수행하고,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	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
법 등)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	법 등) ①
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	
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	
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	<u>소요결정 시</u>
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	
발의 가능성・소요시기 및 소	
요량, 국방과학기술수준, 방위	
산업육성효과, 기술적 · 경제적	
타당성, 비용(무기체계의 획득	
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	
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)대비	
효과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	
한 선행연구(先行硏究)를 거친	<u>선행연구(先行硏究)를 수행</u>
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	하고,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
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전	l
시・사변・해외파병 등 방위력	
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	
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	
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	
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
니하며, 방위사업청장은 같은	
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	
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	

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	
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	
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	
보고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